

친화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직원 친화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하고 사무소는 우리대학교 내에 둔다.

제2조(목적) 본회는 교직원의 상호부조와 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교직원 상호간의 경조
2. 교직원에 대한 대출
3. 교직원의 퇴직에 대한 위로
4. 그 밖에 본회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및 회비

제4조(자격) 본회의 회원은 전임교원과 직원으로 한다. 다만, 조건부 임시직원은 회원이 될 수 없다.

제5조(회비) 회비는 회원 월 봉급액의 1/100 로 하되, 월마다 봉급에서 공제한다

제3장 임원

제6조(구성)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회장 1인
2. 운영위원장 1인
3. 운영위원 8인(교원4, 일반직원4)
4. 감사 2인(교원1, 일반직원1)
5. 간사 1인

제7조(선출·임기) ① 회장은 총장을 당연직으로 추대한다.

- ②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③ 운영위원은 평교수와 일반직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 ④ 감사는 교원과 일반직원 중에서 각각 1인씩을 회장이 선임한다.
- ⑤ 간사는 일반직원 중에서 운영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 ⑥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임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 ② 운영위원장은 회장의 위임을 받아 본회의 모든 업무를 전결 집행하고 운영 사항을 회장에 게 보고한다.
- ③ 감사는 본회의 사업과 재정사항을 감사한다.

- ④ 간사는 운영위원장의 명을 받아 본 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4장 회의

제9조(총회) ① 총회는 연1회 정기적으로 회장이 소집한다.

② 총회는 회원 2/3 출석과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친화회 명칭이나 목적의 변경
2. 친화회의 해산
3. 회칙에 정하지 않은 사업의 집행
4. 회장이나 운영위원회가 총회에 상정한 중요사항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회장의 승인을 받아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 2/3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규약의 개정
2. 대출이율의 변경
3. 총회 상정 안건
4. 그 밖에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5장 급부 및 대출

제11조(부조금지급) 부조금은 [별표]의 부조금지급표에 따르며, 지급하기 전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운영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대출·상환) ① 대출금의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저 소득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② 대출금의 지급은 다음과 같다.

1. 재직기간 1년 미만인 자는 대출을 허용하지 않는다.
2. 재직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인 자는 10,000,000원까지 대출한다.
3. 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는 20,000,000까지 대출한다.

③ 대출금의 상환기간은 2년으로 하되, 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출 받은 자의 봉급에서 원금의 1/10과 이자를 순차적으로 회수한다.

④ 대출금은 퇴직 시 1개월 이내에 상환해야 하며, 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회수한다(신설 '25.5.1).

제13조(대출이자) ① 이자는 변동금리를 적용하며, 이율은 금융기관의 금리를 감안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이자는 월마다 봉급에서 공제한다.

제6장 재정

제14조(재정) ① 친화회 운영회의비는 다음과 같다(신설 `25.5.1).

1. 운영회의비는 학교 예산편성 및 운용지침 회의관련 경비 정산 규정에 따른다(신설 `25.5.1).

제15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6조(수당지급) 본 회의 간사에게 일정액의 직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기타) 그 밖에 본 회의 회계에 대한 사항은 ‘예산회계관리 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이 규약은 198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약은 198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약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약은 199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약은 199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규약은 1995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규약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규약은 2001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규약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규약은 200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이 회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이 회칙은 201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13. 이 회칙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14. 이 회칙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 조 금 지 급 표

<개정 “22.7.12”>

1. 축의금 및 조의금(3년 이상 재직자에 한함)

(단위 : 원)

축 의 금	금 액	조 의 금	금 액
회원결혼	200,000	회원사망	1,500,000
자녀결혼	200,000	배우자, 자녀 사망	500,000
		부모, 배우자의 부모 사망	200,000

- ① 여회원이 결혼을 사유로 퇴직 시 1개월 이내에 결혼하는 경우 규정에 의하여 축의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2.7.12).
- ② 제19조에 의한 부조금 지급은 동일사유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예시: 자녀 결혼, 부모 및 배우자 부모 별세)(개정 `22.7.12).
- ③ 제19조에 의한 부조금 지급은 재직기간 3년 이상 회원에 한하여 지급한다
(개정 `22.7.12).

2. 위로금

- ① 회원질병 (20일이상 치료 결근자) : 100,000원
- ② 회원 수재.화재 피해시 : 200,000원(사학연금법 재해보상 기준 준용)

3. 퇴직위로금 :

2000년 12월 이전				2001년 1월 이후	합 계 (E) = (C) + (D)
근무개월수 (A)	2000년 12월 본봉	본봉 1%(B)	소 계 (C)=(A)*(B)	개인별 실제 납부액(D)	

- ① 76. 3. 1.(친화회 발족일)로부터 기산한다.
- ② 휴직기간 및 파견 등으로 회비가 공제되지 아니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퇴직위로금은 합계 (E)이며, 가산율은 근속년수에 따라 별도 적용한다(개정 `22.7.12).
- ④ 2022학년도부터 2025학년도까지 예상하여 책정한 가산율은 총회 결과에 따르며, 추후 변동될 수 있다(개정 `22.7.12).
- ⑤ 퇴직위로금은 일시금 지급 또는 분할 지급한다(개정 `22.7.12).
1. 퇴직위로금 1천만원 이상: 12개월 분할지급
 2. 퇴직위로금 1천만원 미만: 6개월 분할지급
- (퇴직위로금 지급 시 친화회 자산이 부족할 경우 본인 동의하에 분할지급)

4. 대여 이자율은 5%로 의결한다(신설 `22.7.12).